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·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
제출연월일 : 1998. 5. .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☐ 제안이유

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개별법령의 청문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의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자치법규상의 청문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령을 직접 적용토록하여 행정절차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☐ 주요골자

제3조 (청문)를 삭제함(안 제3조).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·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·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청문)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.	<삭제>